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국토교통위원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권향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552호)

2024.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권향엽의원 대표발의(제2204552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지원(안 제29조의3제1항)	2

I. 권향엽의원 대표발의(제2204552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권향엽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10. 4.

다. 회 부 일 : 2024. 10. 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면 그 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권자에 귀속되어 관리권자가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국가가 산업단지 개발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책임을 맡는다는 정부 내 재정지원 원칙에 따른 것임.

그런데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가 지정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유지·보수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지 않고,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

3. 검토의견

가.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지원(안 제29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① 국가는 국가단지설시계획 또는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u>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u>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u>일부를</u>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의3(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① ----- ----- ----- ----- <u>예산의</u> ----- ----- ----- <u>전부 또는 일부를</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개정안은 국가산업단지¹⁾ 기반시설에 대하여 국가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의3. (생략)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에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 라. (생략)

8의2. ~ 12. (생략)

현행법은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²⁾한 이후에는 그 시설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³⁾⁴⁾시켜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국가가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이 재정상 부담이 될 수 있음.

특히,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한 것으로서, 관리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인 다른 유형의 산업단지와 달리 관리권자가 국가(산업통상자원부장관)⁵⁾이라는 점에서도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기반시설 지원) ①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기반시설의 지원)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도로 및 철도
2. 용수공급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3. 하수도·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산업단지의 공동구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6. 그 밖에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4)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새로 설치된 기반시설이 국가로 귀속되는 경우는 없으며, 모두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다고 설명함.

한 예산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됨.

국토교통부는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해당 기반시설의 소유·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고 재정 당국과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기획재정부는 시설물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유지보수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정부재정지원 원칙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현행법의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 지원 규정은 2015년 12월 29일 신설되었고, 관련 대통령령 규정⁶⁾도 2016년 3월 29일 마련되었으나 현행 법령에 따른 사업 예산 편성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임.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4(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가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는 기반시설(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이나 시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반시설에 해당할 것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교통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 결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 시설일 것

②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 규모,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문 의 처
02)6788-5574